



김다희 시인의
꽃보다 사람 96

국악은 우리 민족 DNA에 새겨진 고유의 음악이다. 하지만 그다지 친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악’ 하면 지루하다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먼저 자리한다. 그러다 근래 들어 이날치, 악단광칠 등 젊은 음악인들이 탈바꿈시킨 대중 국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느리다고 알고 있는 정악마저 BTS의 슈가가 자신의 곡에 ‘대취타’를 삽입하여 우리와 친숙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놀림거리가 되어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어릴 때 배운 피아노는 훗날 자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음악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해 국악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악 선율의 교가를 배우며 낮 쉼에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차츰 우리 전통 예술의 고유한 심미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몸속에 내재된 한국인이라는 유전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예술가의 재능도 그렇고 창작이라는 더 큰 고통에 허우적거리지만, 예술 행정을 직업 삼아 많은 사람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의 올곧은 전승과 창조적 계승을 이어가려 애쓰는 국립부산국악원 이정엽 원장이 국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동기와 포부다. 친척의 권유로 국악을 시작했지만, 국악 발전을 위한 사명감 같은 것이 들끓어 한 길만 건다보니 오늘에 이르렀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늘어가는 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떠나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들도 남의 나라를 찾는 이유가 다른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문화 다양성의 체감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부산국악원은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 국악을 알리는 공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로부터 고국을 그리는 마음과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느낍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 때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우수하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에 앞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과 춤을 지키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국악과 서양음악은 소리로 사람의

국악의 세계화를 꿈꾸다



국립부산국악원 이정엽 원장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출발점과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악은 여백의 떨림 속에서 의미를 찾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담은 음악으로 서양음악이 조화와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국악은 호흡과 울림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더불어 한식, 한복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인과 동시대를 사는 우리를 더욱 한국인답게 만드는 우

리 민족의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국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이자 인류가 향유하는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춤을 즐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탈춤과 농악 등을 아우르는 연희, 배김새라는 독특한 춤사위에 기반한 다양한 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이러한 영남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 작품을 통해 국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 높은 작품을 개발하여 국악의 향유층을 확대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통 국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국가·의례·생활·신앙과 함께하며 민족 정체성을 담아낸 총체적 전통 문화 예술이다. 오늘날 현대음악과 만난 우리 전통 국악은 퓨전 국악, K-pop, 영화 OST 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며 세계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한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며 강조하던 말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국악이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사라져가는 것의 끈을 잇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이정엽 원장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법률상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판단 여부?

Q A씨는 신호등 없는 기울어진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건너고 있었는데, B씨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해당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하여 A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인지 여부로 조사받았는데, A씨가 횡단보도 밖을 통행하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인정될 수 없는 건가요?

A 1.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대표적인 내용이 흔히 우회전 일시정지로 더 많이 알려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라고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의미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①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등의 우연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②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하여 걷는 경우 등과 같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할 의사가 위

부로 나타난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걷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일시적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보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을 대표변호사)